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안 번호	1330
----------	------

제출년월일 : 2011. 11.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정이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함(제4조)
- 나.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5조, 제7조)
- 다.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함(제9조제1항)
- 라.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0조)
- 마. 실무협의회의 회장 및 간사, 운영위원을 실무과장으로 구성함(제14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4. 소요예산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출연 : 연 1백만원

5. 참고사항

협의회에서 정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의할 사항 목록 첨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제정 2011. 11.

제1조(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의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함으로서 댐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을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협의체의 명칭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협의체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받는 댐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3. 강원도 춘천시장·횡성군수·화천군수
 4. 충청북도 충주시장
 5. 충청남도 보령시장
 6. 전라북도 진안군수·임실군수·부안군수
 7. 전라남도 순천시장·광양시장·장흥군수
 8. 경상북도 안동시장·영천시장·청도군수
 9. 경상남도 진주시장·밀양시장·합천군수
- ② 건설 중인 댐은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대상 댐으로 결정되고, 해당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입의사를 밝히면 차기 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둔다.
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선출) ①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자동으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제7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인수) 회장이 변경될 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회장이 소속된 도시 또는 개최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도록 한다.

③ 업무주관 과장(과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열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의결하며, 해당 지자체 간 정보를 교환한다.

1.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 강구
3. 댐 구역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책
4.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결) ①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이 부득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하여 토의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1백만원씩 공동 부담한다.

②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 공동연구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6조(결의사항의 처리) 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조정요구)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이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제19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협의회의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한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 현황

구 분	댐 명	소재지	총저수량 (백만m ³)	지원사업 (백만원)	기관장 성 명
다목적댐	대청댐	대전 대덕구	1,490	4,094	정용기
	소양강댐	강원 춘천시	2,900	5,275	이광준
	횡성댐	강원 횡성군	86.9	895	고석용
	충주댐	충북 충주시	2,750	7,086	이종배
	보령댐	충남 보령시	116.9	974	이시우
	용담댐	전북 전안군	815	2,486	송영선
	섬진강댐	전북 임실군	466	1,714	강완묵
	부안댐	전북 부안군	41.5	676	김호수
	주암댐	전남 순천시	457	2,844	노관규
	장흥댐	전남 장흥군	191	965	이명흠
	안동댐	경북 안동시	1,248	3,628	권영세
	임하댐		595	2,228	
	남강댐	경남 진주시	309	1,948	이창희
	밀양댐	경남 밀양시	73.6	766	엄용수
	합천댐	경남 합천군	790	2,905	하창환
용수조절댐	사연댐	울산 울주군	25	318	신장열
	대곡댐		28.5	195	
	수어댐	전남 광양시	28	444	이성웅
	영천댐	경북 영천시	96	686	김영석
	운문댐	경북 청도군	135	790	이중근
홍수조절댐	평화의댐	강원 화천군	2,630	779	정갑철

협의회 개선·건의사항 채택목록

□ 댐 치수능력증대시 정비사업비 추가 지원

- 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당해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댐 건설 완료 후 치수능력증대를 위한 사업 시행시 치수능력증대에 따른 댐 상하류의 피해가 가중됨
- 개선방안 : 댐 건설 후 추가로 시행하는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도 댐 건설로 인정하여 '법'개정 등으로 댐정비사업 추가 지원 건의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재원 상향

- 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1.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 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 문제점 • 현재 지원비율은 2004.1.29 개정된 것으로 상향이 필요함
 -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미흡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예산으로 건의사항 해결 한계

- 개선방안

- (1안)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에서 (①10% ②15% ③20%)로 상향하고, 100분의 20 이내에서 (①25% ②30% ③35%)로 상향조정 건의
- (2안) 지원사업비를 상향조정 건의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범위 확대

- 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문제점 : ①댐 하류지역에 우기에 댐 방류에 따른 수몰피해 및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에 피해가 발생
②댐 하류지역에 수자원 이용을 위한 취수시설 설치시 하천유지수 감소 및 농업용수 공급에 피해가 발생
- 개선방안 : ①지원사업(출연금)의 상향조정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강구, 지원금 배분 기준을 재조정하여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 균등 지원되도록 개선 건의
②댐 하류지역에 각종 시설 설치시 댐지원 사업구역에 포함되도록 법률개정 건의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개선

- 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당해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문제점 : 지원사업계획을 심의하면서 확정하였고,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정기·수시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사업추진 후 자체 정산으로 개선 건의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